

서울특별시 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

[시행 2024. 5. 20.] [조례 제9266호, 2024. 5. 20., 일부개정]

서울특별시(보행자전거과), 02-2133-2429

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"노인 보호구역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로서 「도로교통법」 제12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.
 - 가. 「도로교통법」 제12조의2 제1항1제1호 ~ 제3호
 - 나.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
2. "장애인 보호구역"이란 「도로교통법」 제12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시장이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.

부칙 <제9266호, 2024.5.20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